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50호 2016. 02. 15.(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1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5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1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암로20번길 17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2. 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2-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14-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17 (검암동)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1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1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67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2번안길 6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2-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2-1 (당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2-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12 (연희동, 서인천농협)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7-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29번길 19-3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1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정로 259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2. 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2-12

업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59 (석남동)	2009-09-22	가정동의 동명을 따.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5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104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52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98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5-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14번길 13 (오류동)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9-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356번길 35 (오류동)	2012-10-25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3-6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안길 15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16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1-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0번길 12 (경서동)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8-58, 218-3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94 (백석동)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 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지구33블럭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74 (마전동, 인천마전고등학교)	2008-12-31	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11블럭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45 (가정동, 구립 두루누리어린이집)	2012-10-25	" 봉오재" 란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6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8 (당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3-12	인천광역시 서구 이든1로 15 (오류동)	2012-10-25	이든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7-2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66-9 (당하동)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15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94-14 (당하동)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13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12 (경서동)	2013-07-31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21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점용기간 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12.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공촌천(지방하천)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2호  
 나. 허가년월일 : 2016. 02. 11.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나. 주 소 : 인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가스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 서구 연희동 428-111 등 4필지  
 나. 기 간 : 119.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5. ~ 2020. 12. 3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22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2. 15.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560-4901, 팩스 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구 청장”을 “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중에”를 “사용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원상복구전에”를 “원상복구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 20일이내”를 “철거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각호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년”을 “해당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제2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2월전에”를 “2개월 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5%”를 “15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위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 인 명		법인구분	시설( ), 지원( )
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 명		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채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	노인복지(○년○월), 영유아보육(○년○월), 아동복지(○년○월), 장애인복지(○년○월) 모자복지(○년○월), 정신보건(○년○월), 부랑아복지(○년○월), 사회복지관(○년○월)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 -----.</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u>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복지시설을 운영한다.</p> <p>1. 2. (생략)</p> <p>3. <u>기타 구청장이</u>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u>은 ----- ----- ----- <u>제2조에 따른</u> ----- ----- <u>각 호의</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구청은 조례 제4조에 <u>의하여</u>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사용자는 사용료를 <u>지정기일</u>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제1호</u></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 <u>따라</u> ----- ----- -----.</p> <p>②----- <u>지정기일</u> ----- ----- -----.</p>

내지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생략)
3. 허가 사용일 30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4. 허가 사용일 15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①사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원상복구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50퍼센트-----.

1. ----- 그 밖의 -----  
-----  
-----
2. (현행과 같음)
3. ----- 30일 전에 -----  
-----
4. ----- 15일 전에 -----  
-----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①-----  
----- 사용 중에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원상복구 전에 -----  
-----.

③----- 제2항에 따른 -----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 및 해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 제3조-----  
-----  
-----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에 따라 -----  
----- 지정기일 내에 -----  
----- .  
②-----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 .

제9조(연장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  
----- 30일 전까지 -----  
----- .  
②----- 제6조에 따라 -----

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 2월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과 사용료 납기

-----  
-----  
-----.

③----- 및 제2항에 따라 -----  
-----  
----- 30일 이내-----  
-----.

④----- 제7조에 따라 -----  
-----  
----- 2개월 전에 -----  
-----.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  
-----  
-----.

----- 범위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

③----- 범위 -----  
-----  
-----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익일부터 일할계산하되, 납부 전일까지 연리 1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④----- 따른 -----  
-----  
----- 15퍼  
센트-----.

제11조(준용) -----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 관계법령 발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234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아니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맞지 않은 상위법령 법조항 수정
-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조항 삭제 및 신설

####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4조 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조항 삭제
-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에 대한 조항 신설
- 제6조 공유재산등의 대부 조항 삭제
-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제9조 과태료 처분 조항 삭제

###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22) 또는 Fax(560-276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 자료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2조의3, 제31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 구역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운영의 지정 해지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구역 내의”를 “구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각각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의 제10조)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른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생략)

<신설>

-----  
 -----  
 -----  
 -----  
 -----  
 -----

<삭제>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제5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 운영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는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거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운영의 지정 해지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그 설치·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 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간 거리 : 100미터 이상 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

⑦ 수거함 관리자는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

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

-----구역의 -----  
 -----  
 -----  
 -----  
 -----  
 -----  
 -----  
 -----.

② ----- 관계 공무원으로 -----  
 -----  
 -----  
 -----  
 -----.

<p>③ <u>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u>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p> <p><u>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u>제9조(과태료 처분) 이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류를 따른다.</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 <u>관계 공무원</u>----- -----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u>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u> ----- -----.</p>
--	---

## 관계법령 참고자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